

**과태료의 부과기준**(제11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31조제1항제1호	17	33	50
나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31조제2항제1호	3	6	10
다.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31조제2항제2호	3	6	10
라. 법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	법 제131조제2항제1			

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호			
1)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		3		
2)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		6		
3)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		10		
마. 법 제122조에 따라 사용자가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·질문할 때 이를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법 제131조제1항제2호	17	33	50
바. 법 제122조에 따라 가입자,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·질문할 때 이를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법 제131조제2항제3호	3	6	10